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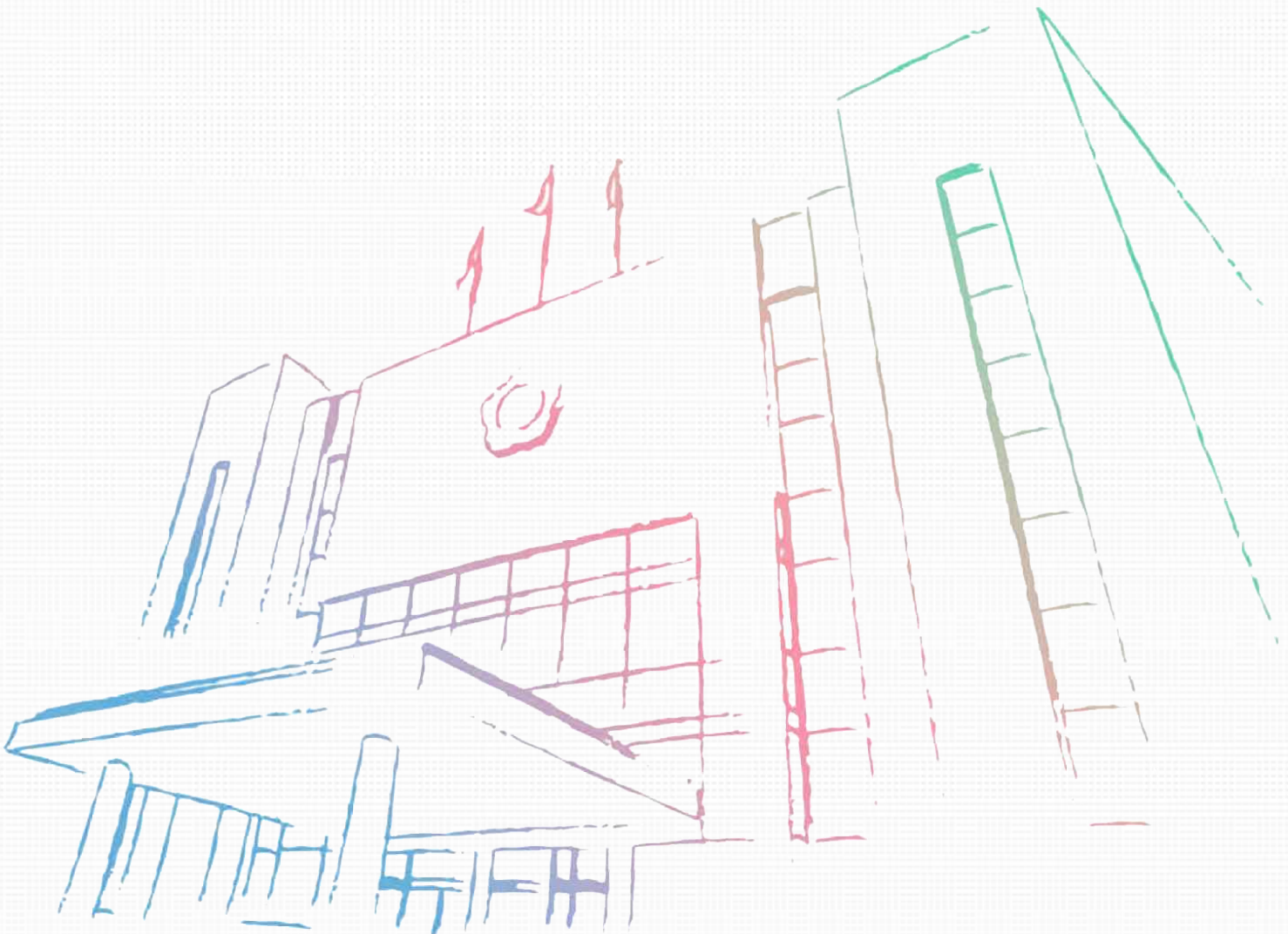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보

2026년 1월





목차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2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3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4

II 다른 시 · 도 조례 입법동향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6
2.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 지원 조례 7
3.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 8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운영비(임대료 · 인건비 등) 지원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전라남도 해남군) 10
2. 의원발의 주민참여 · 소통 조례안의 규정 가능 범위(집행권 침해 · 상위법 충돌) 여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1
3.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조직 · 운영 사항의 규정 형식 및 운영비 · 임금 조례 근거 필요 여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12

IV 국외 입법례

1.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14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외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580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농어촌체험교육·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확대 및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고려한 제도 정비 및 시·도지사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인증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인증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함.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31.] [법률 제20170호, 2024. 1.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
-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처리·제공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신설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조사·통계사업을 포함함.
-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시행 2026. 1. 2.] [경상남도조례 제5977호, 2026. 1. 2., 제정]

□ 제정이유

-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정의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명시함.
- 나.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진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
- 라. 지정 요건 위반,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의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규정을 둠.
- 마.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함.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도별 현황

-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6. 1. 2.]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3049호, 2026. 1. 2., 제정]

□ 제정이유

-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함.
- 나. 교육 지원대상을 괴산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정하고, 수강료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도록 함.
- 다.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기반 구축·프로그램 운영·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라. 일상생활 필수 앱 활용, 금융사기 예방,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마.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 시·도별 현황

- 없음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

[시행 2026. 1. 7.] [경기도조례 제8780호, 2026. 1. 7., 제정]

□ 제정이유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도민의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후행동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함.
- 나. 기후행동 실천 홍보·캠페인, 정보통신기술 활용,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행동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후행동 사업 참여자에게 장비·용품 지원 및 참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라. 기후행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마. 우수사례 발굴·시상 및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도모함.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시·도별 현황

- 없음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운영비(임대료·인건비 등) 지원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426] 전라남도 해남군

□ 질의요지

-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임차료·인건비 등)로 교부할 수 없음. 여기서 ‘명시적 근거’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임.

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은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 노동단체에 대한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 어렵고, 시행령의 경비지원 규정도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경비에 한정됨. 따라서 조례로 노동단체 노동상담소의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

의원발의 주민참여·소통 조례인의 규정 기능 범위(집행권 침해·상위법 충돌) 여부

[의견26-001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질의요지

- 가. 군수에게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소통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무(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로 둘 수 있는지?
-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일정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다. 주민이 일정 요건으로 주민참여회(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개최가 곤란한 경우 다른 방식의 의견수렴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라. 주민의 권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정책 등에 대해 군수에게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이 가능한지?

□ 의 견

- 가. 특정 절차·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의 추상적 노력의무라면, 군수의 고유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례 규정 가능함.
- 나. 주민의견조사 실시 여부를 군수 재량으로 두는 구조는 가능함. 다만 “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 공표”처럼 기간을 확정하면 ‘노력’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구체적 의무로 작동할 수 있어 입안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다. 주민의 개최 ‘요청권’ 부여 자체는 가능하나, 조례 문언이 “개최가 곤란해도 반드시 대체수단으로 의견수렴해야 한다”로 읽히면 군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집행권 침해 소지가 있음. 또한 연서 요건(예: 100명)이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요구 요건 등과 비교되어 오해(강화·대체 규정)를 낳지 않도록 설계가 필요함.
- 라.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제46조)와 기능이 겹칠 수 있음. 조례가 행정예고의 예외사유 판단(재량)을 사실상 배제하거나, 행정예고 외에 중복 통지 의무를 추가하는 구조라면 상위법 취지 저촉·집행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실익과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 신중히 설계해야 함.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조직·운영 사항의 규정 형식 및 운영비·임금 조례근거 필요 여부

[의견26-0014] 부산광역시 강서구

□ 질의요지

- 가. 상시근무 1천명 미만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한지?
- 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출 및 지자체장이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지도자·선수 임금 지출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 의 견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이 규정 형식(조례·규칙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부 운영기준을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음.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직장체육 진흥 취지 및 「지방자치법」상 교육·체육 진흥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보이며, 관련 상위법령에서도 규정 형식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행정규칙으로 규정 가능함.
- 나.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개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등 공금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지도자·선수 임금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자치사무를 위한 통상적 집행경비로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지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조례에 별도의 지출 근거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IV. 국외 입법례

*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6-1호] (2026. 1. 13.)

- 독일은 2026. 1. 1. 시행되는 ‘병역현대화법(포괄개정입법)’을 통해 평시 자발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병력 상황 악화 시 연방의회 결의를 전제로 ‘필요기반 징병제 (Bedarfswehrpflicht)’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법제화함. 18세 이상 남성의 온라인 설문(복무준비 선언서) 응답을 의무화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되, 실제 징집은 긴장·방위사태 등 헌법상 요건 충족 시 발동되도록 설계함.
- 병무 행정은 중앙화·디지털화로 “징집 인프라”를 상시 유지하면서도, 강제 동원은 민주적 통제 아래 가변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행정업무를 연방군 인사관리본부로 이관해 등록·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병역 등록 2.0’(QR 안내문+온라인 설문 의무)을 도입했으며, 2035년 목표(현역 26만/예비 20만) 달성 상황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자원입대가 목표에 미달하면 의회 결의를 전제로 실질 징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부 자의적 동원을 억제하려는 취지임.
- 자발복무 유인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강화됨. 월 최소 2,000유로 급여 보장, 12개월 이상 복무자 기간제 군인(SaZ) 신분 부여,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최대 3,500유로) 등 사회진출 연계 혜택을 도입해 군 복무를 경력·역량 형성의 기회로 재구성함.
- 한계 및 시사점: 독일은 기본법(GG) 제12a조로 여성 강제징집이 어려워 여성은 설문 발송 등으로 자발 참여 확대에 초점을 둔 절충 모델임. 한국은 저출산·안보 위협 상황에서 징집 인프라 사전 구축, 입법에 의한 징병 발동 구조, 전역 후 역량과 연계된 인센티브 설계를 함께 검토할 때 참고할 비교 틀로 활용 가능함.

-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사·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7